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8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을 명하기 전,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전 의견 제출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민진미디어, (주)민진미디어 및 대표 신상철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9**호 (여의도동) 전북 남원시 큰들4길 2*, 2**호(도동동) 경남 김해시 팔판로 9*, 4**동 8**호(관동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법적근거
민진미디어, (주)민진미디어 및 대표 신상철	홈페이지(surprise.or.kr) 내 게시되어 있는 21개의 게시글(URL)*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해당 게시물 삭제) 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의견제출

- 의견 제출 기한 : 2024. 7. 22.(월)까지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담당 : 최희정 주무관(전화: 02-2110-1568, 팩스: 02-2110-0140, happyfamily@korea.kr)

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